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. 5. 30 선고 2022가단528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

담당변호사 홍성필, 최단비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석, 최종석

변 론 종 결 2023. 4. 25.

판 결 선 고 2023. 5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2020. 2. 21.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

1)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. 5. 12. ‘C 등은 원고에게 1,737,216,347원 및 그 중 1,714,637,733원에 대하여 2001. 12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(2005가단373162)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2)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C를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. 4. 12. 2016차13916호로 “C는 원고에게 397,330,539원 및 그 중 82,000,000원에 대하여 2010. 12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16. 9. 20. 확정되었다(이하 위와 같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‘이 사건 양수금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F 주식회사(2015. 2. 21.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, 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2010. 7. 19. 채권최고액이 10억 원, 채무자가 소외 회사, 근저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(2020. 3. 10. ‘2016. 12. 29.자 확정채권양도’를 원인으로 G 유한회사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됨)인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다. C는 2020. 3. 10. ‘2020. 2. 21. 확정채권 대위변제’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‘2020. 2. 21. 확정채권양도’(이하 ‘이 사건 채권 양도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1052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한편, C는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적극재산으로 평택시 H 답 1,306㎡ 공시지가 207,262,200원, I 답 30㎡ 공시지가 4,047,000원이 있었던 반면,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양수금 채무 원금 397,330,539원, J · K · L에 대한 채무 127,000,000원, M에 대한 채무 4억 5,000만 원, N에 대한 채무 3억 원, O에 대한 채무 6억 원, P에 대한 채무 10억 원 등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4, 제2, 4호증, 제7호증의 1, 2, 제8호증의 1, 2, 을 제15호증의 1, 2, 제16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는 채권 추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서 C에 대한 재산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2020. 3. 10. C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이 사건 채권 양도의 존재 및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

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관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79320 판결,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양도일 무렵에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다툼 없는 사실, 을 제4, 6, 7, 9, 10, 11, 12, 13호증의 각 기재,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는 소외 회사의 감사이고 C의 아들 Q이 사내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, 중소기업은행은 2016. 12. 16. G 유한회사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G 유한회사는 2018. 10. 15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, C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5억 원을 변제할 것을 부탁하였고 소외 회사와 G 유한회사, 피고는 2020. 1. 17.경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5억 원을 변제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잔여 대출금 채무는 면제되고 G 유한회사는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합의(이하 ‘이 사건 합의’라 한다)한 사실, 이에 피고는 2020. 1. 17.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에 5억 6,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, C, Q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G 유한회사가 C 명의로 위 5억 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20. 2. 21. C에게 5억 원을 교부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G 유한회사에 5억 원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, G 유한회사는 2020. 2. 28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2020. 3. 10. C에게 ‘2020. 2. 21.자 확정채권양도’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C에게 이전하였으며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‘2020. 2. 21.자 확정채권양도’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이전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당초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가 G 유한회사의 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채무 5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합의 이후 G 유한회사의 요청에 따라 C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는 과정에서(이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는 것을 조건으로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) 이 사건 근저당권이 C 명의로 일시 이전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이 C의 책임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.

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C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채권 양도를

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강문희

별지

부 동 산 목 록

* 토지의 표시

소재지번 : 충청남도 당진시

지 목 : 잡종지

면 적 : 13223㎡

* 건물의 표시

소재지번 : 충청남도 당진시 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당진시

건물내역 : 일반철골조 강판지붕 단층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

1층 동 철골조 폐기물재활용시설 3601㎡

* 건물의 표시

소재지번 : 충청남도 당진시 호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당진시

건물내역 : 경량철골,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

단층창고(분료및쓰레기시설) 180㎡

* 건물의 표시

소재지번 : 충청남도 당진시 호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당진시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단층

분료및쓰레기처리시설 20㎡

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동기소 2010. 7. 19. 접수 제31864
호로 마친 을구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

